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6.
발의자 : 김용민 · 임미애 · 최혁진
김정호 · 전용기 · 한창민
박균택 · 이성윤 · 박은정
장경태 · 김동아 · 이주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,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, 메일,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,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.

우리나라와 달리 미국, 영국, 유럽,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.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.

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

지 공개,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,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(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 제3호의2 신설).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비밀유지권 등)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 및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.

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,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

용

2.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(전자적 형태로 작성 · 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물건

3.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 · 관리되는 일체의 자료

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· 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
 2. 의뢰인이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할 목적으로 변호사의 조언 또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
 3.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사건과 관련하여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
 4.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⑤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.

제1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26조의2제4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26조의2(비밀유지권 등)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 및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.</p> <p>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,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 내용</p> <p>2.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(전자적 형태로 작성 · 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물건</p> <p>3.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 · 관리되는 일체의 자료</p> <p>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</p>
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·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

2. 의뢰인이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할 목적으로 변호사의 조언 또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

3. 변호사와 의뢰인의 그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

4.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⑤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 절차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.

제11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13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제26조의2제4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</u>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